

공장건물에 연결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re Prevention of Temporary Constructions Connected with Factory Buildings

이정용[†] · 이창섭

Joung-Yong Lee[†] · Chang-Seop Lee

경기도소방학교

(2003. 2. 13. 접수/2003. 3. 12. 채택)

요 약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축조되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이 건물과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재예방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건물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관련법규 검토하고, 표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송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유형별 위험성을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설건축물을 본 건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에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증축이 불가능하여 가설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을 소방법상의 특수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건축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여 허가시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

ABSTRACT

Temporary constructions are defined as constructions for temporary use, but frequently, they are used long like permanent constructions and connected with main constructions. In this case, fire hazardousness increase. But there is no way to control this hazard in our system. This study include investigation of present related law, survey about sample complex, collection of related lawsuit result and estimation of hazardousness of each contemporary construction type. The conclusion is that the article that specify distance between main construction and temporary one should be created in the architectural law. Or to apply fire service law to area of temporary construction, fire service law should be changed properly.

Keywords : Temporary constructions, Fire hazardousness, Architectural law, Fire service law

1. 서 론

화재예방의 대상물은 주로 건축물이다.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수장소로 분류하여 이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으로 화재의 예방과 화재 시 피난을 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이 소방법이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가설건축물이다. 일시적인 사용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과 같이 화재의 예방과 피난 등을 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의 대부분은 가연성 재료로 구성되므로 화재 시 빠르게 전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결된 건물까지 연소를 확대하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공장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축조하여 사용되는 일반적인 가설건축물과는 달리 대부분 본건물에 연결되어 장기간 건축물의 일부분으로서 작업장 또는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화재의 위험성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mail: zkemo@hanmail.net

그러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관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법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연면적 400 m²의 공장 건물에 천막으로 연결된 가설건축물 700 m²를 사용할 경우 실질적인 작업장의 면적은 1,100 m²가 되므로 소방법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및 2급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이 된다. 하지만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부분의 면적이 제외되므로 별도의 소방안전을 위한 시설 및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방화관리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화재위험성이 현저히 증가된다.

NFPA의 Fire Protection Handbook에서는 가설건축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형 스프링클러 시스템(residential-type sprinkler system)을 설치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¹⁾ 화재안전기준(National Fire Codes)에서는 임시로 설치된 창고는 관할기관이 요구한대로 임시 구조물을 분리하고 적절한 고정식 소화설비와 휴대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²⁾

우리나라에서도 가설건축물의 축조형태에 따른 위험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관련법규의 검토, 표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소송사례 수집, 가설건축물의 유형별 위험성 고찰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보완책이 될 수 있는 법규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설건축물에 관한 고찰

2.1 가설건축물의 의미

가설건축물이란 임시로 지어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단지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뿐이다.

가설건축물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가설 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뿐만 아니라 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천막구조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장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초점을 맞추었다.

2.2 관련법규 고찰

2.2.1 가설건축물의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³⁾

도시계획지역 또는 그 예정지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⁴⁾의 경우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임시적으로 건축하는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바닥면적의 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시흥시⁵⁾의 경우 ‘관리용 사무실(화원·주차장·체육시설의 사무실로서 경량구조,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경량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을 설치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⁶⁾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가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이며, 용도는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및 이와 유사한 것, 전기를 위한 견본 주택, 가설 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등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정하고 착공 5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2.2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및 신고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⁷⁾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치도, 평면도가 포함된 신고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1일 이내에 처리된다.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그린벨트 지역일 경우에는 지방 국토관리청에 신청·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⁸⁾은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2일 이내에 처리된다.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⁹⁾하고자 하

³⁾건축법 제15조 제1항

⁴⁾안산시 건축조례 제7조

⁵⁾시흥시 건축조례 제18조

⁶⁾건축법 제15조 제2항

⁷⁾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⁸⁾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⁹⁾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¹⁾NFPA, "Fire Protection Handbook", Seventeenth Edition, November, pp.6-157(1992).

²⁾NFPA, "National Fire Codes", Vol. 9, pp.241(1993).

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2.3 가설건축물의 구조

가설건축물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일시적·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형태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 설치하고,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¹⁰⁾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 목적과 구조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 중 공사감리, 대지의 안전,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대지 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견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으며 등기 축탁도 할 수 없다.¹¹⁾

2.3 가설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2.3.1 건축법적 관점에서의 안전관리

건축법에 규정된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건축물로 건축도록 규정¹²⁾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연소확대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대상 가설건축물 58개소 중 본건물과 연결된 35개소를 포함하여 39개 대상에서 편의상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검사는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2.3.2 소방법적 관점에서의 안전관리

소방법은 소방법상 특수장소에 한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¹³⁾하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와 방화관리 업무의 수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이 소방법에 규정된 특수장소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장소의 범위에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화·반월 공단의 공장 중 9개소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가설건축물에 소화기를 비치한 대상은 7개소로 조사되었으나, 현장의 작업자는 소화기의 위치 및 수

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가설건축물 소방시설의 설치와 방화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7개 대상 전체의 관계자가 건축물 등기도 하지 못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의식은 매우 낮았다.

2.4 가설건축물 설치 관련 소송 사례

가설건축물 설치에 관련된 규정은 건축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물과 연결 설치된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 또는 제재 조치에 관한 법규정이 없어 법규 적용에 따른 논란이 더러 발생하였다.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3건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창고의 벽면에 연결된 가설건축물이 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¹⁴⁾이고, 두 번째는 계단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외벽을 알루미늄으로 단장한 행위와 철골을 세우고 천막을 씌우는 건축행위의 법적 성격을 판단¹⁵⁾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는 2동의 건물의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엮을 수 있는 철골 등 구조를 갖춘 것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¹⁶⁾에 관한 사항이다.

이들에 관한 판결 내용을 보면 공히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부분은 토지에 정착되었으며,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으로 구성된 건축물로서, 건축물과 연결된 경우 증축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3. 가설건축물의 설치실태와 화재위험성

3.1 가설건축물의 설치실태조사

3.1.1 표본 선정

가설건축물이 많이 설치된 반월·시화공단 지역 중

¹⁴⁾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94 판결

「창고건물(건평 127.5 평방미터) 벽에 잇대어 철판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두른 증축부분(면적 196.5 평방미터)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¹⁵⁾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929 판결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할 때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함이 판단 유탈인지 여부(소극)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을 알루미늄으로 단장한 행위와 철골을 세워 천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건축한 행위는 모두 증축행위」로 본 사례

¹⁶⁾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26 판결

「2동의 건물의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엮을 수 있는 철골 등 구조를 갖춘 것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동의 건물의 각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엮을 수 있는 철골 등 구조를 갖춘 경우이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된다는 사례

¹⁰⁾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¹¹⁾건축법 제21조, 제29조 내지 제59조

¹²⁾건축법 시행령 제15조

¹³⁾소방법 제9조 및 동법 제30조

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업종의 공장이 포함된 지역을 선택하였는데, 공장 건축 후 기간의 차이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의 필요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공단이 조성된 지 5년 이내인 시화공단지역 5블럭 22개와 공장과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반월공단 608블럭 36개 공장을 표본으로 하였다.

3.1.2 현지조사 결과

표본으로 결정된 대상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시화공단지역 가설건축물 설치 현황

이 지역의 업종은 기계, 섬유, 전기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오래된 건축물의 연수는 5년 이내이다. 이 지역을 구성한 공장의 수는 22개이며, 그중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공장의 50%인 11개이다.

가설건축물이 본 건물과 연결되어 작업장 및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는 대상은 11개 대상 중에서 9개 대상이며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대상 대부분이 작업 공정상 필요한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반월공단지역 가설건축물 설치 현황

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인 공장지역으로 총 36개 대상 중에서 28개소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가설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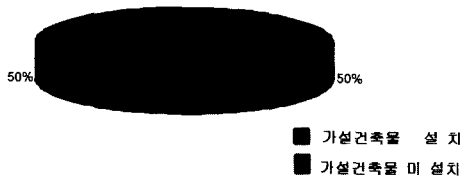


그림 1. 시화공단 지역 가설건축물 설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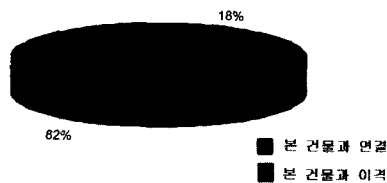


그림 2. 시화공단지역 가설건축물 설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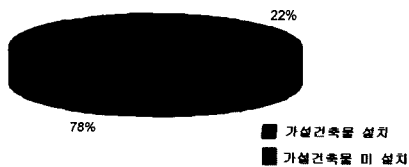


그림 3. 반월공단 지역 가설건축물 설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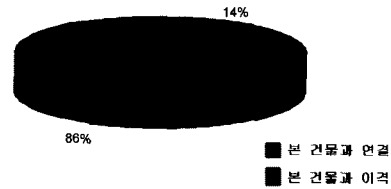


그림 4. 반월공단지역 가설건축물 설치 유형.

이 설치된 대상 중 24개 대상(86%)의 가설건축물이 공장과 연결되어 작업장·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3.1.3 실태분석

(1) 시화공단지역 실태분석

시화공단은 최근에 공단이 조성되어 생산을 위한 작업공간과 제품 저장을 위한 창고 공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의 설치의 필요성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건축된 지 3년 이상된 공장의 경우 생산의 과다와 재고물품 저장 장소 미흡으로 인하여 증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사유에 대하여 공장 관계자의 입장을 인터뷰한 결과, 사유는 2가지로 압축되었다.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 물품을 저장하기 위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증축 보다 손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축조·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입장으로 안전의식의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는 증축을 하고자 하더라도 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100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축 허가가 되지 않아 건폐율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반월공단지역 실태분석

반월공단은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기에 공단이 조성된 지역으로 건축 당시에는 적당했던 작업·창고공간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부족해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시에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있었으나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 건축물의 화재 예방에 대한 사항은 별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가설 건축부분을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법적인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도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최근 경제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위한 투자가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축을 하고자 하더라도 건폐율 규정을 충족시킬만한 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현 상태를 유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3.1.4 인터뷰 결과

실태조사대상 중에서 공장건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장 중 무작위로 9개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자의 화재위험성 인식

9개 대상 중 7개 대상의 관리자는 공장건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화재예방상 약간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개 대상의 관리자는 화재발생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였다.

(2) 화재예방활동

가설건축물은 주로 천막 등의 가연성 재료로 축조되어 지므로 주변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흡연을 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비한 방화순찰, 소방훈련 등의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한 적에 있는냐는 질문에 9개 대상 전체가 전혀 화재예방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설치 유형에 따른 화재위험성 및 보완책

3.2.1 가설건축물로 인하여 별개의 동이 통합된 유형
기존 건축물인 A동과 B동이 가설건축물 C로 인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경우이다. 가설건축물 C가 없을 경우 A와 B는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되어 있으므로 A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B로 연소확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가설건축물 C로 2개의 건축물이 연결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C를 매개로 하여 A에서 발생한 화재가 B로 확대될 수 있다.

소방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적용 관점에서 볼 때 그림 1은 A동과 B동을 가설건축물 C로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연면적의 증가 효과를 얻어 사실상의 증축으로 봐야 한다.

증축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2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통로·복도 또는 피트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 적용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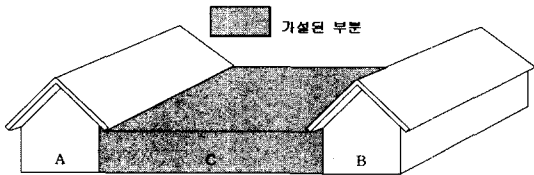


그림 5. 2개의 동을 연결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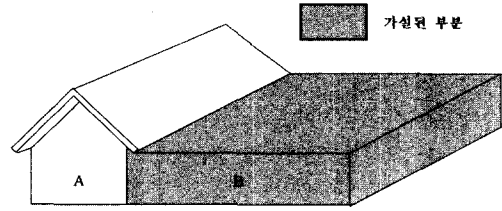


그림 6. 본 건물과 연결된 형태.

연결된 2 이상의 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간주하는 것¹⁷⁾을 볼 때, 전체면적을 1개의 소방대상물로 보아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2.2 가설건축물이 본건물에 연결된 유형

기존 건축물인 A동에 가설건축물 B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공단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보편화된 가설 건축물 설치 유형이다.

이러한 경우 건축 구조상 화재에 취약한 B동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결된 A동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

소방시설 설치기준¹⁸⁾은 특수장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2의 경우를 보면 가설건축물 B로 인하여 작업·저장·취급 공간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B를 특수장소로 분류해야 하므로 시설 적용에 대한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3.2.3 가설건축물과 본 건물이 별개의 동으로 된 유형

기존 건축물인 A와 가설건축물 B가 별개의 건축물로 건축되어 일정한 거리로 이격된 경우에는 각 동에서 발생한 화재가 쉽게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방법 제30조(특수장소의 소방시설)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용하므로 법 적용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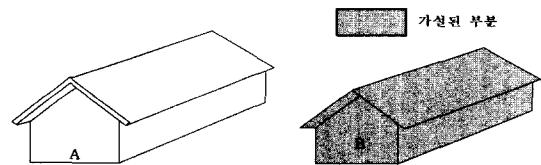


그림 7. 별개의 동으로 설치된 형태.

¹⁷⁾소방법 시행령 제 25조

¹⁸⁾소방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¹⁹⁾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화재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하여 순찰 및 소화기 비치 등을 권장할 수 있다.

4.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제언

건축법에는 가설건축물의 구조와 적용제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축물과의 연결·이격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관리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적용 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소방법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 적용 시 특수장소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가설건축물이 본 건물과 이격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없으나, 본 건물과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의 연면적

을 증가시킨 증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화재발생 시 건축 재료의 특성에 따라 화재 확대가 쉽게 이루어지는 위험성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규 적용 시에는 이러한 가설건축 부분을 특수장소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행정수행에 한계가 있다.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는 기존 건축물과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나 건축물에 연결된 가설건축물 축조를 건축행위 중 증축으로 규정하여 건축법 및 소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을 제·개정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4.1 건축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 15조 (가설건축물)</p> <p>① 법 제 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p>제15조 (가설건축물)</p> <p>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좌 동 4. 5. 6. 7. (신설)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물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표 2. 건축물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p> <p>①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p>	<p>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p> <p>①</p> <p>좌 동</p> <p>②</p> <p>③ 법 제 15조 7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이격거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¹⁹⁾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

4.1.1 가설건축물 구조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가설건축물 설치 단계부터 본건물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건축법에 신설하
여 화재연소확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4.1.2 본건물과 이격하는 거리에 관한 규정 신설
본건물과 가설건축물의 이격거리는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2층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를 연소할 우려가 있
는 부분으로 규정한 건설교통부령²⁰⁾을 준용하는 규정
을 신설하고, 위반 시 벌금형에 관한 규정과 시정명령
규정을 제정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4.2 소방법의 특수장소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건축법의 견폐율이나 용적을 규정 등으로 인하여 건
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
하는 경우는 건축물과 연결되어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소방법에 규정된 특수장소에 포함시켜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설건축물이 건축물에 해
당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을
건축행위 중 증축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4.2.1 소방법의 특수장소 범위에 포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석하면 건축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
적, 층수 또는 높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건축행위

로서 특수장소의 증축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증축은
건축물의 규모가 증가되는 것으로서 화재 등 위험성의
정도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소방시설 기준 적용
시 신축의 개념을 적용하여 증축되는 건물 전체에 대
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
칙이다.

따라서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에 건축법 제 15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다음 안과 같이 포함시켜야 할 것
이다.

4.2.2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절차에 의한 소방법 적용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
축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증축허
가시 소방법 제8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적용하여 본
건축물과 그에 연결된 가설건축물 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신고)청은 소방관서장의 동의
를 받고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를 처리하도록 함
으로써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예방업무 수행 책임에 관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장건물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가설

표 3. 소방법 시행령 제 4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대 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0, 1995.8.10, 2001.3.20, 2002.3.30>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건축법 제25 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 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 보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할 건축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특수장소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p>	<p>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 ……제8조 제2항 및 제 15조 제2항의 규정 …… 1. …… 제8조 및 제 15조 제2항의 규정 …… 가. 좌동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 부분을 포 합한다) *단서 조항을 신설함</p>

표 4. 건축법 제 15조(가설건축물) 개정안

현행 법령	개정안
<p>제15조 (가설건축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 계획시설에 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 축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15조 (가설건축물) ① 좌 동 ② (신설) 건축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 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²⁰⁾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관련법규 검토하고, 표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송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유형별 위험성을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가설건축물을 본 건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에 신설해야 한다.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증축이 불가능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을 소방법상의 특수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방법

시행령 제 4조를 개정해야 하고, 건축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여 허가시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 4조를 개정해야 한다.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법규의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의식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